

12.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8-401호 1998. 9. 14

개 정 이 유

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설계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,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을 가스사업법령으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,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일정규모이상으로 할 경우 특별피난계단과 구획하지 않고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.
- 나. 개별난방방식을 채용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법령에 따르도록 함.
- 다.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중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모든 공공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함.

주택회보